

「이산화탄소 포집 및 광물탄산화 기술 적용 시멘트 제품 종합실증센터 구축」

## CCU 및 전후방산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2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충북도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광물탄산화 기술 적용 실증으로 시멘트산업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2025년 이산화탄소 포집 및 광물탄산화기술 적용 시멘트 제품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을 통하여 시멘트산업 발전과 기업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가 지원하고 (재)충북테크노파크 주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충청북도지사,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시멘트 산업 CCU(포집·활용)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실증센터 구축의 하나로 콘크리트 2차제품 및 레미콘社 기업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이산화탄소 포집 및 광물탄산화기술 적용 시멘트 제품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5. 01. ~ 2026. 12. 31.
- 사업내용
  - ESG 기반 저탄소 경영체계 컨설팅지원
  - 공공시장 진출 기업인증지원 등
    - ※ 환경표지인증, 조달혁신제품인증, 성능인증, 기타 인증 등
- 주관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참여기관 : 한국세라믹연구원, 한국에너지연구원,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인천대학교, 우석대학교, 충북테크노파크

#### ○ 지원 분야

-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 기업 등 관련기업
- \* 붙임 : 관련 산업분류 코드 참고(공장등록증 산업분류번호 확인 必)

## ○ 지원사업내역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예산	사업기간
ESG 기반 저탄소 경영체계 컨설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공정컨설팅 지원</li> <li>▪ CCU활용 공정 컨설팅</li> <li>▪ 에너지절감 공정 컨설팅</li> <li>▪ 폐기물 저감 경영 컨설팅</li> <li>▪ ESG 평가 상향 컨설팅</li> </ul>	기업당 1,200만원 이내	'25. 11월 이내
공공시장 진출 기업인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표지인증 컨설팅 지원</li> <li>▪ 혁신제품지정 컨설팅 지원</li> <li>▪ 성능인증 컨설팅 지원</li> <li>▪ KS, ISO, CE 등 컨설팅 지원 등</li> </ul>	기업당 1,200만원 이내	'25. 11월 이내

※ 본사업과 같은 내용 사업으로 수행 또는 선정된 과제와 중복지원 불가(중복 확인시 탈락처리)

※ 모든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기업 자부담(현금)편성(모든 지원사업 부과세는 별도 기업부담)

※ 공급기업에 자부담/부가세를 전가할 경우 향후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중복소재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사업장 소재지가 1개 이상 중복에 있는 기업

○ **지원사업비 및 사업기간**

- 지원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하며, 지원사업별로 기업부담금 확인 필요, 지원금에 대한 부가세는 전액 지원기업 부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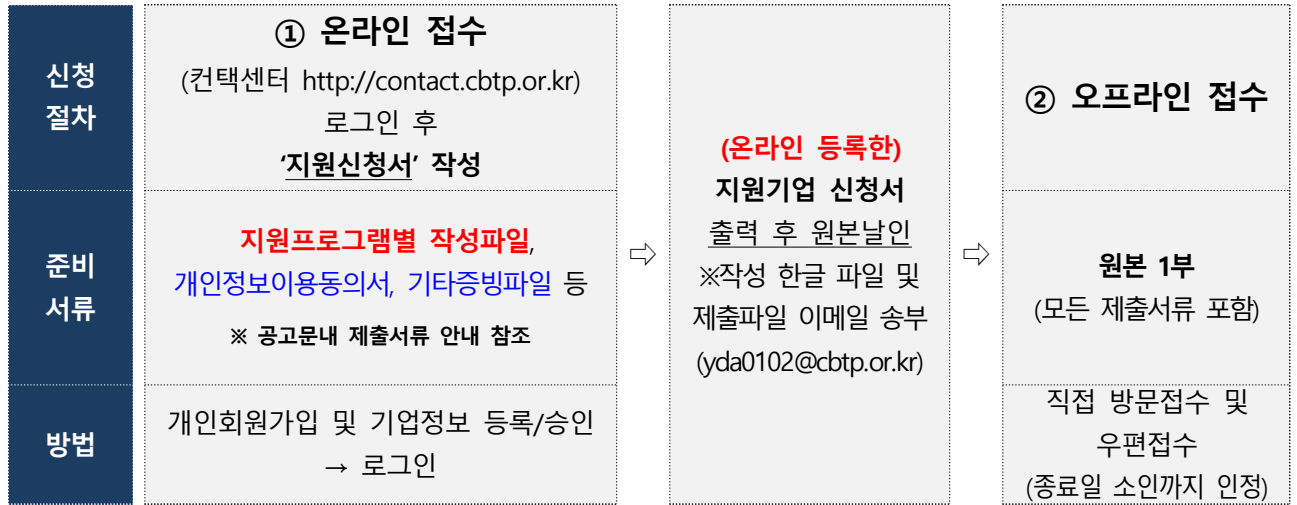
##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 공고 : **2025. 10. 01.(수) ~ 2025. 10. 22.(목)**
- 서류제출기간 : **2025. 10. 13.(월) ~ 2025. 10. 22.(수) 오후 17:00까지**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지원기업	공급기업
① 사업신청서(원본1부)	○	○
② 사업계획서(원본1부)	○	해당기업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해당기업
④ 공장등록증 1부 (사본)	해당기업	해당기업
⑤ 견적서 사본 1부	○	○
⑥ 공급기업 자격사항 확인서(원본1부)	해당없음	○
⑦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
⑧ 기업역량자료 1부 (보유 인증 및 특허, 수상자료 등)	해당기업	해당기업
⑨ 결산재무제표 1부 : 최근 결산일 기준 (2021년~2024년)	○	○
⑩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	○
⑪ 가점증빙 1부 (사본)	해당기업	해당기업

※ ①~⑪을 1개씩 순서대로 묶어 총 1부(원본) 제출

## ○ 접수 및 제출방법



단계	구 분	내 용
1	신청 및 사업계획서 (양식)	<a href="http://www.cbtp.or.kr">www.cbtp.or.kr</a>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2	컨택센터(과제관리시스템) 회원가입	<a href="http://contact.cbtp.or.kr">contact.cbtp.or.kr</a> : 회원가입(미가입시) 및 기업진단
3	온라인 사업신청	<a href="http://ccu.cbtp.or.kr">ccu.cbtp.or.kr</a> : 자료 업로드(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b>※ 작성 신청서(모든 제출서류) 및 한글파일 포함 필수</b>
4	서류제출(원본1부)	충북테크노파크(오창) 본부관 2층 기업지원단 사무실 지역사업팀 제출

※ 신청서류 오류 및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기업에 있으므로 항상 확인 必

## ○ 지원프로그램별 공급기업 자격요건

분야	자격요건
컨설팅	설립 후 3년 이상경과, 상근컨설턴트 3인 이상,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5천만 원 이상의 기업으로 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컨설팅 전문회사
시험분석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으로 시험분석서비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기관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판정

### 3 추진절차

사업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TP(컨택센터) 홈페이지 (<a href="http://www.cbtp.or.kr">http://www.cbtp.or.kr</a> 또는 <a href="http://contact.cbtp.or.kr/">http://contact.cbtp.or.kr/</a>)</li> <li>2025. 10. 01.(수) ~ 2025. 10. 22.(수)</li> </ul>
↓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컨택센터 신청 후 서류 제출 (<a href="http://contact.cbtp.or.kr/">http://contact.cbtp.or.kr/</a>)</li> <li>2025. 10. 13.(월) ~ 2025. 10. 22.(수) 17:00까지</li> </ul>
↓	
서류 사전검토 (R&D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신청서, 재무제표 등 서류 사전검토</li> <li>중복지원 여부 등 검토</li> </ul>
↓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 평가위원회 / 서류 및 발표평가 진행</li> <li>예산범위내 8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지원</li> <li>선정결과 통보 (개별통지)</li> </ul>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체결(수정사업계획서, 최종견적서 등)</li> <li>결과평가 후 지원금 지급</li> </ul>
↓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추진 중간실태조사</li> </ul>
↓	
최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지출증빙서류 포함) 제출</li> <li>최종평가위원회 (사업수행성과 및 사업비 사용 적절성 평가)</li> <li>기업부담금 입금 확인</li> <li>사업비 정산 안내 및 최종평가 성공시 지원금 교부</li> </ul>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화 컨설팅 및 연속적 추적 관리</li> </ul>

※ 상기일정 및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 가점 (최대 10점)

- 지원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접수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증빙서류)												
①	ESG 인증서	2점	전문기관 ESG 인증서, 결과보고서												
②	시멘트제품 종합실증센터 회원기업	2점	전문기관 확인												
③	정부 인증 보유(ISO 및 KS 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녹색인증, 성능인증, 이노비즈 등)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구분</td> <td>1개</td> <td>2개</td> <td>3개</td> <td>4개</td> <td>5개</td> </tr> <tr> <td>점수</td> <td>1점</td> <td>2점</td> <td>3점</td> <td>4점</td> <td>5점</td> </tr> </table>	구분	1개	2개	3개	4개	5개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1~5점	인증서
구분	1개	2개	3개	4개	5개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④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수상 여부(합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구분</td> <td>대통령상</td> <td>국무총리상</td> <td>장관상</td> <td>광역단체장상</td> <td>기초단체장상</td> </tr> <tr> <td>점수</td> <td>5점</td> <td>4점</td> <td>3점</td> <td>2점</td> <td>1점</td> </tr> </table>	구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광역단체장상	기초단체장상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1~5점	상장 사본
구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광역단체장상	기초단체장상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보유	3점	인증서												
⑥	충청북도 도내 장기 영위기업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구분</td> <td>7년이상</td> <td>10년이상</td> <td>20년이상</td> <td>30년이상</td> </tr> <tr> <td>점수</td> <td>2점</td> <td>3점</td> <td>4점</td> <td>5점</td> </tr> </table>	구분	7년이상	10년이상	20년이상	30년이상	점수	2점	3점	4점	5점	2~5점	사업자등록증		
구분	7년이상	10년이상	20년이상	30년이상											
점수	2점	3점	4점	5점											
⑦	가족친화기업	1점	인증서												
⑧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증서												
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⑪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 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⑫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⑬	충북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⑭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⑮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⑯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근로자 수를 90% 이상 유지한 기업(2점) 또는 6개월 평균 근로자 수가 6개월 전 근로자 수 대비 150% 증가한 기업(3점)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2~3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내려받은 피보험자격취득목록을 해당 기업이 제출												
⑱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특허출원 5개 이상(5점), 4개(4점), 3개(3점), 2개(2점), 1개(1점) ※ 2022년 X월 XX일 이후 출원 또는 등록증	1~5점	특허출원증 또는 등록증												

## 5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 ○ 유의사항

- ① 타 과제와 동일 과제에 대하여 중복 수행할 수 없음
  - ② 부가가치세 (V.A.T)는 수혜기업에서 부담 원칙
  - ③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④ 입금된 사업비 통장을 현금인출 및 타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 시 사업비 환수
  - ⑤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 제한 등 불이익 주어짐
  - ⑥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
-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지원제외 대상

- 해당 사업기간 내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동일자금 등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방지)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색결과 유사과제인 경우
  - 동일과제에 대해 타 기관에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 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기타 충북도 및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6 접수처 및 서류제출

-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 76,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2층  
기업지원단 지역사업팀 김대환 주임
- ※ 인터넷 접수(필수) 후 현장 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 ☞ 유동아 선임 (E-mail : yda0102@cbtp.or.kr, Tel : 043-270-2232, Fax : 043-270-2999)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요구 시 (재)충북테크노파크 감사실(043-270-2901~2) 또는 홈페이지(<http://www.cbtp.or.kr>)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 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 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 사업신청 유의사항 종합안내

## □ 사업비 지원금액, 기업부담금 작성 안내

1. **천원 단위**로 입력하여 주세요.(예. 20,000,000원 ( × ), **20,000천원 ( ○ )** )
2. **지원금액(90%) + 기업부담금(10% 이상) = 총사업비** 입니다.
3.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기업부담임 - 별도)
4. **기업부담금은 지원프로그램별로 제시한 기준 이상 부담해** 주세요.  
-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매칭**

(예시1) 지원금액 3,000천원(90%) + 기업부담금 340천원(10%)	= 총사업비 3,340천원(100%)
(예시2) 지원금액 5,000천원(90%) + 기업부담금 560천원(10%)	= 총사업비 5,560천원(100%)
(예시3) 지원금액 7,500천원(90%) + 기업부담금 840천원(10%)	= 총사업비 8,340천원(100%)
(예시4) 지원금액 9,000천원(90%) + 기업부담금 1,000천원(10%)	= 총사업비 10,000천원(100%)
(예시5) 지원금액 10,000천원(90%) + 기업부담금 1,200천원(10%)	= 총사업비 11,200천원(100%)
(예시6) 지원금액 15,000천원(90%) + 기업부담금 1,700천원(10%)	= 총사업비 16,700천원(100%)
(예시7) 지원금액 22,000천원(90%) + 기업부담금 2,500천원(10%)	= 총사업비 24,500천원(100%)
(예시8) 지원금액 30,000천원(90%) + 기업부담금 3,400천원(10%)	= 총사업비 33,400천원(100%)
(예시9) 지원금액 50,000천원(90%) + 기업부담금 5,600천원(10%)	= 총사업비 55,600천원(100%)

※ **견적서 총액에서 부가세 제외 후 10%이상 기업부담한후 잔여금액을** 지원합니다.

## □ 기타 온라인 등록시 유의사항

- 통합접수사이트 : 충북 컨택센터 <http://contact.cbtp.or.kr>
- 회원가입은 개인회원으로 등록하고, 로그인 후 기업정보를 등록합니다.
- 온라인 등록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 [신청완료] 를 하지 않고, **[임시저장] 중인 온라인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최종 접수 관련 안내

- 수시마감하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지원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신청하시어 추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의 **담당자에게 오프라인 접수를 하여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선정평가 이후 선정여부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금액 10,000천원 초과시 발표평가 실시)**
- 지원신청서는 **지원프로그램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CCUS 연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KSIC코드	KSIC 분류명	KSIC코드	KSIC 분류명
C2011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F41122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C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F41210	지반조성 건설업
C2011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F41224	환경설비 건설업
C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F41229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C29177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F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C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M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C20122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F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G4671	연료, 연료용 광물 및 관련 제품 도매업	M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H52104	위험 물품 보관업	F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H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M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H49302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F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H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F42131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H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B0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H49102	철도 화물 운송업	C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H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F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H52104	위험 물품 보관업	C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H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M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H52911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M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H52919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M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H52922	선박관리업	F41122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H52929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F41224	환경설비 건설업
N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F41210	지반조성 건설업
M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F41224	환경설비 건설업
H52919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F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H52929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C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M72923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C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B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C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M72923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C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B0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C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B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C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M72923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B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G46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B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G467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M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G46799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N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M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F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M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M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M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M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M72923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M71101	변호사업
F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M71102	변리사업
O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M71103	법무사업
E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M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C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M71201	공인회계사업
C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M71202	세무사업
C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M71209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C20201	합성고무 제조업	M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C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M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C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C20122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C23311	시멘트 제조업	C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C23322	레미콘 제조업	M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C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M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C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M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C20112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M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